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77
----------	-------

발의연월일 : 2024. 1. 12.

발 의 자 : 김용판 · 박성민 · 하영제
金炳旭 · 백종현 · 김영식
박대수 · 전봉민 · 이주환
임이자 · 권명호 · 최춘식
박덕흠 · 김성원 · 강대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의 운영정지”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의 운영정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u>취소할 수 있다</u>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⑤ (생략) <u><신설></u>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u> ----- -----. 1.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u>기관의 운영정지</u> 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의 운영정지</u> ----- -----. 1.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